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국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449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홍국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영옥,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춘선, 신복자, 윤종복,
이성배, 이종환, 임춘대,
정지웅, 최민규, 허 · 훈
의원(21명)

1. 제안이유

- 고물가·고금리로 내수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프랜차이즈(가맹사업)는 소자본 창업의 대표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분쟁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임.
- 서울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관계를 조성하고 상생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고자, 법규를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가맹점사업자와 상생·협력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맹본부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를 202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 또한 서울시는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평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으나, 해당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의 근거 규정과 평가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 지원내용, 선정취소 및 운영실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 나.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를 비상설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9조와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선정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맹본부 중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 사업자와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확산하는 데 이바지한 가맹본부를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평가와 제20조에 따른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였을 것
2. 서울특별시에서 가맹점을 운영한 기간과 관내 가맹점 수가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② 시장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와 그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맹본부에 대한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인증서 및 인증패 제공
2.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홍보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4.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노무·경영 컨설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0조에 따른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 폐업, 부도, 휴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④ 시장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 요건 중 서울특별시에서 가맹점을 운영한 기간과 관내 가맹점 수,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인증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이하 “평가운영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다만, 평가운영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1.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3.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의 평가 및 확산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가맹거래사·변호사·세무사·기업인 등 가맹사업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평가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9조(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선정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맹본부 중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사업자와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확산하는 데 이바지한 가맹본부를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평가와 제20조에 따른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정보 공개서를 등록하였을 것 2. 서울특별시에서 가맹점을 운영한 기간과 관내 가맹점 수가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p><신 설></p>	<p>② 시장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와 그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맹본부에 대한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인증서 및 인증패 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공</u></p> <p><u>2.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홍보</u></p> <p><u>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u></p> <p><u>4.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노무·경영 컨설팅</u></p> <p><u>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u>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0조에 따른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p> <p><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u></p> <p><u>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u></p> <p><u>3. 폐업, 부도, 휴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u></p> <p><u>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u></p> <p><u>5. 그 밖에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u></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u></p> <p>④ <u>시장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⑤ <u>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 요건 중 서울특별시에서 가맹점을 운영한 기간과 관내 가맹점수,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인증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20조(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이하 “평가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평가운영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에 관한 사항</u> <u>2.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u> <u>3.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u>

현행	개정안
	<p><u>의 평가 및 확산방안에 관한 사항</u></p> <p><u>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u>② 평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u></p> <p><u>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u>④ 위원은 가맹거래사·변호사·세무사·기업인 등 가맹사업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p><u>⑤ 평가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제19조(협력체계 구축) (생략)</u></p>	<p><u>제21조(협력체계 구축) (현행과 같음)</u></p>
<p><u>제20조(예산지원) (생략)</u></p>	<p><u>제22조(예산지원) (현행과 같음)</u></p>
<p><u>제21조(시행규칙) (생략)</u></p>	<p><u>제23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u></p>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0조(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 위원회)에 따라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서울시 관련부서(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 문의결과 기추진사업¹⁾으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주 무 관	손 제 승

☎ 02-2180-7935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기추진사업] 서울시 경제실 2026년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 우수 상생 프랜차이즈 선정 : 120,000천원
⇒ 참고로 서울시 관련부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서 평가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수당(연 20,000천원 편성) 정도이며, 신청건수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달라지는 구조이므로, 향후 신청건수가 늘어날 경우 현재 편성된 금액보다 소요되는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Ex. 30,000천원)됨